



대 구 지 방 법 원

제 2 - 1 형 사 부

판 결

사 건 2025노49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통신매체이용음란)

피 고 인 A

항 소 인 피고인

검 사 박진우(기소), 박우성(공판)

원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5. 11. 27. 선고 2025고단1321 판결

판 결 선 고 2026. 8. 21.

주 문

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.

이 유

1. 항소이유의 요지

원심이 선고한 형(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,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)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.

2. 판단



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,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인정된다.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, 피고인이 임의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여 여성인 피해자가 전화를 받자,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자신의 성기를 노출한 채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2회에 걸쳐 전송한 것으로, 그 죄질이 나쁜 점,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, 피고인은 2018년도에도 5회에 걸쳐 이 사건과 유사한 방법의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, 위 처벌전력 외에도 피고인이 장물취득죄, 상해죄 등의 여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, 원심판결 선고 후 양형에 참작할 새로운 정상도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, 성행, 환경, 범행의 동기와 경위, 수단과 결과,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검토해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.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김정도 _____

 판사 김성수 _____

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. 비실명처리일자 : 2026-09-21

판사 이상균 _____